

【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6-97호】

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중단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
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중단 처분 대상자에게 처분 사전통지(의견제출 통지)를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6. 08. 04.

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



- 1. 건 명 :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
- 2. 근 거 :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4항, 제29조제1항제6호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
- 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성명	생년월일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 내용			송달불능 사유	주소
			예정된 처분	처분 사유	처분 내용		
업○	1997.12.17.	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	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	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의무 불이행	-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- 종료일로부터 3년간 재참여 제한	우편 반송 (폐문부재)	계양구 장제로 878번길 (이하생략)

- 4. 공고기간 : 2026. 8. 4. ~ 2026. 8. 18. (15일간)
- 5.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인천북부고용센터 직접 방문 또는 팩스(0503-8830-0128)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- 6. 기타사항은 인천북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한효정(Tel. 032-540-5831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